


[국민신문고 바로가기 >](#)

이 메일은

 회원님에게 발송된 메일입니다.
(2021년 11월 02일)

처리결과 알림

민원번호	1AA-2110-1212082
신청일	2021-10-28 15:34:04
신청인 구분	개인
신청인 이름	
연락처	
휴대전화	
주소	
전자우편	
공개여부	공개
진행상황 통보방식	진행상황통지방식(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, 문자메시지) 민원답변통지방식(전자우편, 누리집(홈페이지))
민원제목	가공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중 식품첨가물 허용 여부
민원내용	<p>당사가 생산판매하고 있는 오르니틴염산염은 2021년 3월 16일로 한 시적 기준 및 규격에 의하여 인정된 식품첨가물입니다. 오르니틴염산염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식품은 당류가공품, 음료류, 조미식품 및 기타가공품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.</p> <p>오르니틴염산염이 함유된 당류 가공품을 오르니틴염산염 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식품유형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이 가능한지 또한 오르니틴염산염이 함유된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의 기타 원료</p>

로 사용이 가능한지요?

아래의 관련 규정이 상기 건에 관한 근거가 될수 있는지요?

식품 공전 중

3.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

3)식품첨가물

(1)

(2)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건강기능식품공전

제2. 공통 기준 및 규격

2. 공통제조기준

7)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

첨부파일

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알림(오르니틴염산염).pdf

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(오르니틴염산염).pdf

식품첨가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서_별첨자료(오르니틴염산염).pdf

처리결과

처리기관 정보

나의민원으로 가기

처리기관	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첨가물기준과
담당자	
민원인 신청번호	1AA-2110-1212082
접수일	2021-10-28 15:50:20
처리기관 접수번호	2AA-2110-1106048
처리에정일	2021-11-05 23:59:59.0

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.
(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)

처리결과(답변내용)

답변일	2021-11-02 17:56:59
처리결과 (답변내용)	<p>1. 안녕하십니까?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(신청 번호 1AA-2110-1212082)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.</p> <p>2. 귀하의 민원내용은 '식품첨가물의 원료유래 규정'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</p> <p>가. 식품첨가물 원료유래 관련 사항(주관부서 : 첨가물기준과)</p> <p>1) 현행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고시의 제2. 3. 3) (1)에서 '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.'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</p> <p>2) 오르니틴염산염을 사용한 당류가공품을 다른 식품에 사용하는 목적, 제조공정 등 상세 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, 한시적 기준 및 규격으로 인정된 오르니틴염산염의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된 당류가공품을 오르니틴염산염을 사용할 수 없는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, 오르니틴염산염이 당류가공품에 사용된 범위 내에서 최종제품에 이행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</p> <p>나.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항(주관부서 : 식품기준과)</p> <p>1) 귀하의 민원내용은 '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오르니틴염산염이 함유된 당류가공품 사용가능 여부 확인'에 관한 것으로 이해하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/p> <p>2) 건강기능식품에 사용되는 기타원료는 「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제2. 공통 기준 및 규격 1. 3)에 따라 별도의 규격을 설정하지 않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또는 성분을 말하며, 기타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에 적합한 것,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 적합한 것,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입니다. 다만 기능성 원료 또는 영양성분을 사용할 때에는 섭취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고려하고,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으로 사용하여야 하며, 「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 및 기준·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개별인정 받은 기능성 원료는 인정서가 발급된 자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3) 아울러, 상기 고시 제2. 공통 기준 및 규격 2. 공통제조기준 7)에 따라 어떤 제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의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p>

4) 따라서, 귀하께서 오르니틴염산염이 함유된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 기타원료로 제조에 사용하시고자 한다면, 상기 나. 2), 3)항의 규정에 따라 「식품의 기준 및 규격」 및 「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」에 적합한 경우라면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.

3. 참고로, 식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(www.mfds.go.kr) 또는 식품안전정보포털(www.foodsafetykorea.go.kr)을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품 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.

4. 이 밖에 답변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, 식품첨가물 관련 사항은 첨가물기준과 에게, 건강기능
 식품 관련 사항은 식품기준과 에게 연락주
 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첨부파일

민원신청서.htm

이메일 주소를 변경하시려면, [나의 이용내역 > 정보관리](#)에서 수정하시면 됩니다.



본 메일은 발신전용 메일입니다.

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아래 이용안내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(30102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

정부민원안내 콜센터 (국번없이)110 / 시스템관련 이용안내 : 1600 - 8172(대표번호) / 070-4140-1458(일반전화)

상담안내 09:00 ~ 18:00(평일)